

[붙임2]

소송 및 법률자문에 관한 규정(안)

제정 2013.9.30.

개정 2014.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수행과 법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소송사건과 신청사건, 비송사건 등을 말한다.
2. “법률자문”이란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건부점”이란 소송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법률자문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영업점을 말한다.
4. “법무지원부서”란 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소송업무의 처리와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변호사의 선임

제4조(선임의 원칙) ①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 소송수행 능력, 이해상충 여부, 관련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되어야 한다.

② 소의 제기(상소 포함), 취하, 화해 및 피소에 대한 응소 등 소송절차는 직원이 수행하거나 변호사등(공사 직원이 아닌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 후보군) ① 사건부점장(이하 “부점장”이라 한다)은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등으로 부점별 소송대리인 후보군(이하 “후보군”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군의 효율적인 선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부점 또는 영업본부별로 후보군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7.25.)

② 후보군 구성원의 수는 부점장이 연간 소송규모, 소송대리 위임건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후보군의 모집) ① 후보군을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할 후보군 구성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선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후보군의 선임) ① 후보군에 속한 구성원의 자격은 2년 단위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사 임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그가 소속된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후보군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부점장은 후보군의 선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
2. 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실적
3. 소송수행능력
4. 공사와의 이해상충 여부

제8조(청렴성 검증 등) ① 후보군을 선임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내역 전력 조회 등을 통해 청렴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내역 조회결과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등을 후보군으로 선임하여서는 안된다

③ 부점장은 후보군 선임 시 구성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 위반 시 선임을 해지하는 <별지1>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기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④ 후보군 선임 후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선임을 해지한다.

⑤ 후보군으로 선임된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사에 이를 신고하여 소송을 수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2.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

제9조(위임계약) ① 사건부점은 제7조에 따라 후보군으로 선임된 변호사등과 <별지2>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에 따라 부점장 전결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항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부점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소지한 경우에 한함)

제10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제4조제2항에 의해 변호사등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부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군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소제기 기간경과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경우
2. 소송대리인 후보군 중 수임 희망자가 없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무지원부서에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4. 경쟁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5. 사내변호사 등 후보군의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소송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소송의 위임은 특정 변호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수행결과 평가 등) ① 부점장은 선임된 후보군 구성원에 대해서는 매년 소송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후보군 재선임 여부 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후보군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임을 하여서는 안된다.
 1.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수행태도가 태만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되는 경우
 4. 기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12조(평가위원회) ① 제7조제3항의 후보군 선임 및 제11조제1항의 소송수행결과 평가를 위해 후보군 구성단위별로 3인 이상의 소송대리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25.)

-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3> “제안서 평가표”에 의한다.
- ③ 제11조제1항에 의한 평가는 <별지4>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표”에 의한다.
-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7.25.)

제13조(법률자문) ①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무지원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문변호사와 <별지5>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제2항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건부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지원부서에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부점에서는 자문요청의 배경, 질의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사건부점은 자문이 완료된 경우 <별지6> “법률자문결과 평가표”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법무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지원부서는 평가결과를 자문변호사 선임기간 만료 시 연임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의 보고

제14조(소송보고) ① 사건부점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제외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 대하여 <별지7> “소송보고”에 따라 법무지원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중 주택보증구상금청구소송, 양수금청구소송
2. 신청사건
3. 비송사건

② 보고는 제소의 경우 소제기 전, 피소의 경우 피소 직후에 하여야 하며, 특히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고하여 응소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또는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로서 처리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먼저 제소 또는 응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4.7.25.)

제15조(처리방향의 결정) ① 법무지원부서는 소송보고사건에 대하여 중요도와 대응방향 등을 결정하여 사건부점에 통지하여 참고토록 한다.

② 소송보고사건은 다음과 같이 중요도를 구분한다.

상(上)	·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 공사업무 처리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中)	· 동일유형의 사건과 관련된 대표소송 · 대내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소송 · 기타 업무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건
하(下)	· 중요도가 상,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

③ 사건부점은 사건중요도에 따라 중요도가 상 또는 중인 경우 법무지원

부서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건중요도가 하인 경우 후보군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자체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법무지원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16조(사건진행 보고) ① 사건부점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내변호사 및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보고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사건부점은 매 심급별로 소장 사본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지원부서에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송심의회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 법규팀장 및 각 사업부서 실무팀장, 사내변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보고사건의 중요도(上, 中, 下) 판단
2. 특별보수 지급 필요성
3. 기타 소송 수행 시 고려할 사항

제19조(운영) ① 심의회는 제14조에 따라 소송이 보고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대응방향이 명확하거나 단순한 소송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의 경우 심의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면책확인소송
2. 사해행위취소소송
3. 배당이의소송
4. 동일 부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미 심의회를 통해 대응방향이 결정되어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유형의 소송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건부점 담당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법규팀장은 심의회 의 논의사항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수의 지급

제20조(소송착수금) 소송위임변호사의 소송착수금은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최고금액은 20백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승소사례금) ① 부점장은 제20조의 단서적용을 배제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 지급한 착수금과의 차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사례금은 각 심급별로 적용되며, 공사의 승소(일부승소 포함)가 최종 확정된 때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다.

③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해당심급에 해당하는 승소 사례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소 각하
2. 소 취하
3. 상대방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
4. 무변론판결

⑤ 각 심급별 소송위임 변호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최종 판결확정 이전심급 단계에서 교체된 변호사에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특별보수 지급)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임원(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법률자문 보수) ① 자문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한 경우

그 보수는 1건당 1백만원 이내에서 법무지원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소송위임 변호사에 대하여는 해당소송과 관련된 업무질의에 대해서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외에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소송운영현황의 공개

제24조(소송기록의 관리) 사건부점에서는 변호사별 소송위임 현황 및 단계별 진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25조(소송운영현황공개) 법무지원부서는 소송수행 등과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 소송수행 변호사 등의 선임 및 운영 규정 등
2. 후보군 선정현황(성명, 소속, 선정기간 등)
3. 소송대리 현황: 후보군 구성원별 사건위임 건수 등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임하는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청렴서약서 (제8조제3항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후보군 구성원으로서 당 법무법인(변호사)은 공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한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는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귀중

<별지2>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서(제9조제1항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변호사(____법무법인) ____ (이하 “변호사”라 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 등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임사무의 범위) 변호사는 공사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사 업무와 관련한 소송수행
2. 소송수행과 관련한 질의회신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조(보수의 지급) ① 제1조 제1호에 의한 소송사건의 수임보수는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공사는 변호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에 관한 지급청구를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이 경우 공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세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제3조(신의성실 및 비밀조항) 변호사는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약기간) ①이 계약서에 의한 위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위임계약 기간중이라도 공사 또는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이전 공사는 소송업무 수행 편의성 및 해당 영업점의 소송업무량, 적정 변호사수, 기타 필요에 의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고, 변호사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공사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사무원 등의 활용) 변호사가 필요에 따라 사무원 등을 활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무원 등에 대해서도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여 준수토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상충행위 방지)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공사에 신고하고 소송을 수임하여서는 안된다.

1.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2.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

제7조(손해배상)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무원 등이 공사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공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는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한다.

1.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서류작성이나 위임업무 수행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3. 기타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공사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8조(기타사항) 변호사는 인감, 사용인감, 주소 기타 주요사항이 변경된 때에 이를 공사에게 즉시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서면통지를 지연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변호사가 부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위임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위 대리인 지사장 (인)

수임변호사 :

<별지3>

제안서 평가표(예시)(제7조제3항 관련)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기준	배 점	매우 좋음 (100%)	좋음 (80%)	보통 (60%)	미흡 (40%)	매우 미흡 (20%)
1. 공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공사가 수행하는 주택 금융업무의 이해						
나. 공사업무와 관련한 주요 법적 분쟁의 이해						
2. 공사업무와 관련된 소송수행 실적						
가. 구상금(양수금 포함) 청구소송						
나. 그 외의 소송						
3. 소송수행 능력						
가. 소송업무 수행경력						
나. 구성인력의 적절성						
다. 유사소송 수행경험						
합 계						
이해상충 유무(○, X)						
최근 5년 이내 징계 등 여부(○, X)						

* 부점장은 해당 부서의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4>

변호사 소송수행 평가표(제11조제1항 관련)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해당 건수	총건수	평가 점수	비고
① 기본 점수	기본 배점	-	-	-	-	100	
② 감점 요인	수행 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10				
		보정사항 미이행	10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10				
		제소기간(1개월) 미준수	10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	10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0				
	소계						
③ 가점 요인	공사업무 기여도	소송보고사건 중 중요도가 상(上)·중(中)인 사건의 승소	10				
		새로운 선례의 정립	10				
	소 계						
평가합계(①-②+③)							

[평가기준 적용 방법]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 * 100 * 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다. 소송대리인 후보군 운용부점별로 평가하며, 해당 부점의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지5>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서(제13조제3항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법무법인_____ (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사이 에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위임 업무(이하 “법률자문의뢰 등”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 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임사무의 범위) 법무법인은 공사가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사법령 및 기타 업무관련 법령의 해석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2. 공사가 요청하는 회의 참석 및 의견제시
3. 공사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4. 업무관련 임직원 피소사건 법률구조
5. 기타 공사의 법률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제3조(전담변호사의 지정) 법무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공사의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지정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료(부가세 별도) : _____
2. 제2조제3호에 의한 소송수행은 공사의 해당 사건부점과의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서로 갈음하며, 동 소송위임 보수는 공사가 정하는 보수지급 기준에 의한다.
3. 공사는 법률 자문료를 매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제2호의 소송위임 보수는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법무법인은 공사의 법률자문의뢰 등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제공된 문서 및 자료 등 공사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사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법원, 행정기관 등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해관계의 충돌) ①법무법인은 공사로부터 법률자문의뢰 등을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공사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 이외의 자를 대리하거나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무법인은 공사로부터 법률자문의뢰 등을 받은 사항이 다른 의뢰인 등과의 사이에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 공사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의 충돌여부는 공사가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는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정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 ①이 계약서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이 별도의 계약연장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계약 기간 중이라도 공사 또는 법무법인의 사정에 의해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3조의 전담변호사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위임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수임자 :

<별지6>

법률자문 평가표(제13조제5항 관련)

1. 자문 건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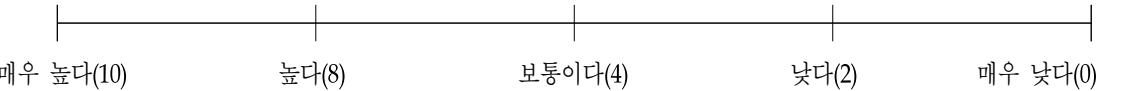
2. 자문법인(변호사) :

3. 평가결과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의 정확성(3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6)						
2. 자문의 유용성(3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 않다(6)						
3. 자문의 적시성(3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13일이내	15일초과	
점 수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 난이도 평가(법규팀)

평 가 항 목	점 수
o 자문의 난이도(10점) 	

<별지7>

소송보고(예시)(제14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부점장(인)

사 건 종 류 (사 건 번 호)		사 건 구 분	제 소, <피 소>
관 할 법 원		상 대 방 (소송대리인)	○○은행 (법무법인 00)
소송물 가액		진 행 단 계	
사건 중요도	상(√)	-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 공사업무 처리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건()	
	중()	- 동일유형의 사건과 관련된 대표소송(집단중도금 채무부존재소송 등)() - 대내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건() - 기타 업무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건()	
	하()	- 소송결과가 단일건에 국한되거나 난이도가 평이한 사건() - 기타 공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건()	
사건개요(소제기 이유 및 주요쟁점 등)			
검토의견(승소 가능성 및 근거, 공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특별보수 지급 필요성 등)			
대응방안			
제도개선 필요여부 (※ 예시 : 관련 법령, 약관 또는 내규등 개정사항)			

※ 주택보증 구상금 및 유동화관련 양수금 청구소, 신청사건, 비송사건은 보고대상에서 제외